



##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

[시행 2021. 11. 22.] [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-539호, 2021. 11. 22., 일부개정]

국가기술표준원(생활제품안전과), 043-870-5458

- 제85조(공급자적합성확인)**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규칙 제46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생활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86조(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)** 제8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생활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
2. 제품설명서(사진을 포함한다)
3.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,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가.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
  - 나.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
4.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

**부칙** <제2021-539호,2021.11.22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